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5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12월 12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 심의를 위원 출석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골자

- 안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 중 “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”를 “출석으로”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략)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 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 ----- ----- --.	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 출석으로 ----- ----- -----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 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③ ~ ⑤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1. <u>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2. <u>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